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. 11. 29 선고 2018가단112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중앙회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1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C에게 공주시 D 임야 10,711m²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8. 10. 29. 접수 제241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지웅

별지